

한국의 아동보호사업에 대한 사회구성주의적 접근과 함의*

김 현 옥

(경남과학기술대학교)

[요 약]

본 연구는 아동보호사업에 적용될 수 있는 사회구성주의적 가치에 근거하여 우리나라 아동보호사업의 문제점과 함의를 도출하고자 이루어졌다. 연구문제는 첫째, 아동보호사업에 적용될 수 있는 사회구성주의적 가치를 정리하고, 둘째, 외국의 아동보호사업에서 사회구성주의적 가치를 검토하였으며, 셋째, 사회구성주의적 관점에 근거하여 우리나라의 아동보호사업과 외국의 아동보호사업에 대한 차이와 함의를 제시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연구문제와 관련한 연구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먼저, 국내외 문헌 연구를 통하여 아동보호사업에 적용될 수 있는 사회구성주의적 가치로서 협상과 참여를 도출하였으며, 다른 나라의 아동보호사업에서 참여와 협상의 방법을 법적 제도적 기반 중심으로 평가하였다. 마지막으로, 초점집단토론(focus group interview)을 중심으로 아동보호사업에서 참여와 협상을 통해 민주적 관계의 재구성을 시도해야 한다는 것, 학대자의 참여와 협상을 강제할 법적 근거가 부족한 점, 아동이 협상당사자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문제, 아동보호와 관련한 법 개정 방향 등을 토론했다. 이와 같은 내용을 바탕으로 우리나라 아동보호사업에 대한 제언을 제시하였다.

주제어 : 아동보호사업, 사회구성주의, 참여, 협상, 초점집단토론

1. 서론

1) 문제제기와 연구의 필요성

2000년 이루어진 아동복지법 전문개정에서 아동학대 금지조항이 신설되어 우리나라에서도 아동학

* 본 연구는 한국사회복지학회 2011년 추계학술대회 자유주제 발표원고를 수정·보완한 것이며, 경남과학기술대학교 2012년 기성회 연구비 지원으로 완성되었습니다.

대는 금지되어야 하는 사회악임을 공식선언 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유교적·가부장적 전통이 강한 우리나라에서 아동학대를 범죄이자 사회문제로 규정한 것에 대한 의의는 다른 나라보다 더욱 크다고 볼 수 있다. 왜냐하면 첫째, 과거 아동에 대한 체벌허용도가 높은 문화적 전통을 가졌었다는 점에서 보면 우리나라에도 아동학대를 사회적 문제로 간주하는 변화된 시각이 도래되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가족이나 가정에 대한 가부장의 지배와 통치는 당연한 것이며 외부의 개입은 부당하고 불필요한 것으로 여겨졌던 전통적 관점에서, 개인에 대한 인권적 차원에서 공적개입도 있을 수 있다는 변화된 시각으로 가족을 해석하는 시점에 이르렀다고도 볼 수 있기 때문이다. 한편 우리나라는 개정된 아동복지법에 근거하여 각 시·도를 중심으로 2013년 현재 48개소의 아동보호전문기관을 설치하여 아동보호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이러한 아동보호전문기관은 아동보호사업을 수행하는 중심기관으로서, 학대피해아동의 치료와 예방을 위한 중추적 핵심기능을 수행한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아동보호와 관련된 법과 제도의 미비로 인하여 아동보호 실천가들이 아동과 학대자의 참여를 이끌어 내는 과정에서 한계를 경험하거나, 실질적인 아동보호를 수행하는데 많은 어려움에 봉착한다는 보고가 많았다(변귀연·오승환, 2009; 고주애, 2010; 김미정·최말옥, 2012).

아동보호사업의 한계와 관련하여, 문영희(2010)는 아동보호와 관련된 법적 상충을 지적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아동복지법에는 아동학대를 방지하기 위한 친권제한이나 친권상실의 조치를 적시한 반면, 민법은 아동의 당사자 적격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그로 인하여, 아동의 법적 권리가 제한되고 있다고 보았다. 우리나라에서 아동은 자신을 학대하는 학대자를 대상으로 소송을 할 수 있는 자격을 인정받지 못하고 있으며, 아동 그 자신이 후견인을 지정할 수도 없고, 심지어 부모가 학대자인 경우에도, 아동의 소송후견인을 부모가 지정하도록 법제화되어 있다(김유미, 1996; 이세원, 2008; 이현재, 2009; 문영희, 2010; 이은정, 2010).

또한 아동보호전문기관의 법적 권한이 미비하여 학대자의 참여를 강하게 이끌어낼 수 없는 한계가 존재한다고 볼 수 있다(변귀연·오승환, 2009; 고주애, 2010; 김미정·최말옥, 2012). 학대자가 아동보호 실천가를 회피하거나 서비스를 수용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다른 나라처럼 이들의 참여를 강제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이 미비하다는 것이다(김경호, 2003; 장영인, 2007). 이로 인하여 학대피해아동에 대한 공적 개입은 무력하거나 중간에 좌절되는 경우가 빈번하였다(고주애, 2010). 이와 같이, 우리나라는 아동학대를 법적 금지의 대상으로 선언하였으나, 실질적인 아동인권을 보장하고 아동보호를 실현하기에는 요원하다고 할 수 있다. 이는 근본적으로는 아동의 인권을 보장하고 아동보호를 실현하는데 요구되는 패러다임이 부재하기 때문에 겪는 혼란으로 여겨진다.

한편, 사회구성주의는 소통을 통하여 사회 구성원의 민주적 관계를 지향하는 후기 현대사회의 새로운 사조로 평가받고 있다. Ferguson(2003)은 과거 가족은 그 역할과 정체성이 엄격하게 고정되어 있었고 아동은 성인에게 순종적일 것을 요구받았으나, 현대사회에서 가족은 아동이나 여성을 엄격하게 구속하지 않으며, 전통적으로 고정된 역할을 강요하지 않는데 이르렀다고 하였다. 특히 '아동권리에 관한 국제협약' 선언 이후로 아동은 의사무능력자가 아니라 소통의 대상이며, 인권적·인격적 주체로 재해석되고 있다(Qvortrup et al., 1994). 아동에 대한 새로운 해석이 등장함에 따라 사회구성주의는 아동학대문제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이론적 관점으로 부각되기에 이른다. 또한, 학대피해아동이나 아

동학대자와 소통하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참여를 이끌어내는데 유용한 이론적 관점으로 평가받고 있다(김경호 외 역, 2012: 123-144).

또한, 과거 아동은 보이기는 하되 들러서는 안 되는 존재로 규정되어 수동적 통제의 대상으로 고정되어 있었으나(Ferguson, 2003), 자신의 의견을 표현하며 참여하고자 하는 욕구는 성인과 대등한 존재로 해석되기에 이르렀다. 앞서 언급하였듯이, 우리나라는 가부장적 성격이 강하며 가족에 대한 공격 개입이 용이하지 않은 한계가 존재한다. 게다가 친권자인 부모가 학대자가 되는 경우가 압도적으로 많기 때문에¹⁾, 아동의 비자발성과 학대자의 저항을 통제할 수 있는 강력한 법적 기반이 요구된다. 무엇보다, 아동보호 실천가들의 경험을 토대로 한 법과 제도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본다. 이들이야말로 아동과 학대자의 참여를 이끌어내고 아동보호를 실현할 최일선의 서비스 제공자이기 때문이며, 아동보호와 관련된 법과 제도의 구현은 궁극적으로 아동보호현장에서 검증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아동보호사업에 적용될 수 있는 사회구성주의적 가치에 근거하여 우리나라의 아동보호사업과 관련된 법과 제도를 평가하고 아동보호 실천가들의 토론을 통하여 그 함의를 도출하고자 이루어졌다.

2) 연구문제와 연구의 구성

본 연구의 연구문제는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아동보호사업에 적용될 수 있는 사회구성주의적 가치는 무엇인가?

연구문제 2. 사회구성주의적 가치가 외국의 아동보호사업에서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가?

연구문제 3. 아동보호사업에 적용될 수 있는 사회구성주의적 가치와 외국의 아동보호제도에 관하여 아동보호 실천가들의 어떻게 토론하고 있는가?

이러한 연구문제에 근거하여 연구의 구성은 다음과 같이 이루어졌다. 첫째, 국내외 문헌 연구를 통하여 아동보호사업에 적용될 수 있는 구체적인 사회구성주의적 가치를 정리하였다. 둘째, 아동보호사업에 적용될 수 있는 사회구성주의적 가치가 외국에서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법과 제도를 중심으로 평가하였다. 셋째, 아동보호사업에 적용될 수 있는 사회구성주의적 가치와 외국의 아동보호제도에 관하여 초점집단토론(FGI)을 중심으로 검토하였으며, 우리나라의 아동보호사업의 변화와 발전을 위한 함의는 무엇인지 토론하였다. 따라서 전문가 집단토론의 범위는 문헌연구를 통하여 정리된 연구문제에 초점을 맞추어 진행되었다.

1) 2011년 학대 행위자와 아동과의 관계를 살펴보면 친부가 2,780명, 친모가 1,520명으로 친부모가 4,300명이며, 학대자의 약 80%정도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여전히 아동학대는 가정 내에서 친부모에 의해 가장 빈번히 발생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문선화 외, 2012).

2. 사회 구성주의의 의의와 가족의 재구성

1) 사회구성주의의 개념과 유용성

1970년대에 논리실증주의와 객관주의적 가치관은 개인이 현재 대면하고 있는 현실이 무엇인가를 간과한다는 비판을 직면하게 되었으며, 그 대안으로 형성된 철학이자 사조가 사회구성주의이다 (Parton and O'Byrne, 2000). 또한 포스트모더니즘이나 페미니즘 등의 인식론과 밀접히 관련된 사회복지실천이나 심리치료를 아우르는 사회과학 분야에서 사회구성주의는 패러다임의 변혁으로 평가되고 있다(Mahoney, 1995).

사회구성주의적 관점에 의하면, 정책환경의 전개과정에서 누구에 의해 어떠한 방법으로 문제가 규정되어 왔는가, 혹은 어떤 집단이 문제라고 주장하는가를 중요하게 여긴다(Giddens, 2002). 문제를 규정하는 과정에서 권력이나 이익을 획득하는 사람이 존재하고 영향력을 더 많이 유지하는 집단이 등장하기 때문이라고 주장하였다(Ferguson, 2003). 고정불변의 체계 그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권력에 의해 사회의 문제나 불이익을 규정해 가는 그 과정이 중요한 것임을 강조한 것이다. 따라서 우리가 사회 문제를 규정하였던 과정을 분석해 보면, 그 문제 자체가 가지는 심각성에 의해 규정되었다기보다, 미처 자각하지 못했던 권력에 의해 혹은 그 권력을 유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회문제를 규정하였다고 볼 수 있다(Howe, 1994). 이와 같이 법이나 제도의 구축을 통해서 해결해야 하는 특정 사회문제에 관한 사회구성주의적 접근이란, 기본적으로 권리결정에 기반한다(Payne, 1999). 아동학대나 가족폭력 등을 사회문제로 규정하는 그 정도도 바로 그 사회의 권력관계 혹은 권리를 통한 협상이라고 간주할 수 있을 것이다(Payne, 2005).

한편 Giddens는 어떻게 살 것인가와 누가 될 것인가와 관련하여 이제 우리는 새로운 선택을 하고 있으며, 사회 환경과 소통하고 참여해서 자신을 형성하고 확장해야 하는 시대에 이르렀다고 보았다(권기돈 역, 2010). 이와 같이 사회구성주의가 지닌 유동적 소통과 상호작용의 중요성은 사회복지현장에서 더욱 확장·적용되고 있다. 실제로 사회복지현장은 해석의 다양성에 대해 열려 있으며, 사회복지의 내부인을 포함한 외부인 등에 의해서도 사회복지현장은 상이하고 복잡하게 규정될 수 있을 것이다(Howe, 1994). 사회복지현장의 이러한 복잡성과 다양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 획일적이며 객관적인 개입을 목표로 설정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며, 클라이언트에게는 의미가 없을 것이다(Pennell, 2006). 가장 중요한 점은 사회구성주의적 관점에서 보면, 사회복지현장에서 도출되는 이해와 동의는 관여된 당사자들에 의한 재구성이라고 볼 수 있다(Saltiel, 2013). 따라서 클라이언트에 대한 모든 개입과정은 사회복지사의 객관적인 정보전달과, 클라이언트의 주관적인 욕구분석 모두 대등하게 중요할 것이다. 또한, 사회복지사와 클라이언트를 포함한 개인이 대면하는 실재와 현실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사회구성주의의 특징으로 인하여, 관련된 개인의 관계는 보다 개방적이며 민주적일 것을 지향하고 있다.

2) 민주적 관계를 통한 아동과 가족의 재구성

근대까지 개인의 정체성은 국가나 가족 혹은 지배적인 종교기관 등을 통하여 각자의 위치를 지킬 것을 요구받는 엄격하고 경직된 사회구조에 의해 형성되어 왔다(김경호 외 역, 2012: 123-144). 또한 아동은 성인에게 순종적이며 예의를 지켜야 한다는 가치관이 지배적이었다(Ferguson, 2003). 이러한 특징은 현대사회에 이르기까지 동·서양의 공통점으로 볼 수 있다. 가족은 각자의 역할과 기능에 대해 참여적인 협상을 할 필요도 없었으며, 당연히 아동의 인권 문제도 사회적 이슈가 되지 못하였다. 그러나 탈산업화 이후 현대화와 개인주의의 사조로 인하여 아동기와 아동에 대한 이해가 새로워졌으며, 아동 인권 의식이 발아되기 시작하였다(Ester et al., 1994). 여성의 경우 모성 역할을 넘어서서 근로와 사회진출의 기회를 가지게 되었으며(Swift, 1995: 34-46), 좋은 아버지가 된다는 것 역시 엄격한 가부장이 아니라 적극적인 양육자가 되는 것으로 설명되기도 하였다(Burgess, 1998: 24-29; McKeowon et al., 1998: 178-181).

이와 같은 개인에 대한 인식과 사조의 변화는 아동보호에도 다음과 같은 영향을 미쳤다. 구체적으로, Munro(2011: 39-50)는 현대가족의 두드러진 특징은 복잡성과 다양성이기 때문에, 아동보호사업을 포함하여 가족에게 개입하고자 하는 사회복지현장은 가족의 변화된 특성의 정도를 반영해야 한다고 보았다. Saltiel(2013) 역시 현대가족은 비전형성과 복잡성이라는 특징이 있기 때문에, 가족들 고유의 규칙은 있으나 이 규칙 역시 비전형적이라고 보았다. 이로 인하여, 사회복지사와 같은 가족 외부인이 쉽게 예측할 수 없다고 하였다. 따라서 가족 내에서 새로운 관계가 구축되도록 하기 위해서 사회복지사는 그들과 소통하고 협상해야 하는 소위 파트너십을 수반한 협상이 필요한 시대가 되었다고 보았다(Saltiel, 2013).

한편, 현대사회에서 아동은 더 이상 성인 의존적인 의사 무능력자가 아니라, 인권적·인격적 주체로서 재해석되고 있다(Qvortrup et al., 1994: 367-369). Hallett(2000)는 가부장적 패러다임의 약화가 아동인권의 개념을 등장시키는데 영향을 미쳤다고 보았다. 동시에 아동기에 대한 새로운 사회학의 등장 역시 아동인권의 개념에 많은 영향을 미쳤다고 본다. 구체적으로, 아동기는 연령 구분된 특정 시기로 존재한다고 보는 기존의 시각은 다분히 성인의 편견으로 이루어진 사회 구성의 산물에 지나지 않는다는 사조가 등장한 것이다(James and Prout, 1990; Qvortrup et al., 1994; James et al., 1998). 이에 대해, James 외(1998)는 아동에 대한 사회적 구성은 아동기에 대한 사회적 구성과 맥락을 같이하기 때문에, 아동기에 대한 사회적 구성이 달라지면 아동에 대한 사회적 구성이 달라진다고 주장하였다. 결과적으로, 아동은 예전처럼 성인의 소유물 정도가 아니라 성인과 마찬가지로의 권리적 속성을 지닌 인격체로 인정받기에 이르렀다(Oldman, 1994; Qvortrup et al., 1994). 물론, 아동 인권의 개념이 달라졌다 하더라도, 이 개념에 대한 인식의 차이는 여전히 존재하며, 아동과 관련한 법률적 범위와 적용은 상이한 것이 현실이다(Alston et al., 1992: 76-85). 추상적인 시각으로 아동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아동의 참여를 본다면 누구도 반대할 리 없는 가치이지만, 법률 관계에서 아동을 협상의 당사자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아동과의 권력관계에 대한 상반된 논의가 발생할 수 있을 것이다(D'Cruz and

Stagnitti, 2008).

사회구성주의적 관점에서 가족을 보는 또 하나의 특징으로, 가족과 같은 친밀한 관계에서 소통과 개방성을 요구하고 있다는 것이다(Jamison, 1998). 이에 대해 Cashmore(2002)는 여성과 남성 그리고 아동 모두가 상대방의 권리를 부인하지 않는 관계, 친밀하면서 민주적인 관계를 구성할 필요에 당면했다고 보았다. Cashmore(2002)의 주장대로, 가족 안에서의 민주적 관계는 현대 사회의 규범으로 이미 인정받고 있다고 여겨지며, 아동보호체계가 이를 합법적으로 뒷받침해야 할 것이다(Jamison, 1998). 사회구성주의적 관점에서 재구성된 아동과 가족의 내용을 표를 통하여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 1〉 사회구성주의적 관점에서 아동과 가족의 재구성

	과거의 구성	현대의 재구성
가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부장적 가족 • 고정된 역할, 경직된 관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민주적 관계의 가족 • 유동적 역할, 복합적 관계
아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인에게 종속된 객체적 존재, 비권리적 존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인과 동일한 인격적 주체, 권리적 존재
아동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인과 연령 구분된 불연속적 시기로서 아동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적 구성으로서 아동기

3. 아동보호사업에 대한 사회 구성주의의 적용

1) 아동보호사업에서 참여와 협상의 가치

Parton(1997)은 사회구성주의적 관점에서 아동학대의 개념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아동의 신체적 질병처럼 과학적·계량적 접근과 진단만으로 이루어질 수 없으며, 그 시대의 가치 반영을 통해 구성되는 아동과 가족의 문제로, 그리고 사회의 문제로 규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Parton(1997)의 주장대로, 우리 시대의 가치 반영을 통해 아동의 인권과 아동보호사업에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친 것으로 '아동권리에 관한 국제협약'이 존재한다(장영인, 2007; 이은정, 2010; Alston et al., 1992; Sanders and Mace, 2006). '아동권리에 관한 국제협약(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1989)'은 그 당사국과 당사국의 아동관련 전문가들이 실천 활동에 있어서 아동의 의사를 반영하고 아동의 참여를 보장하도록 강제력을 띤 법적 지침을 제공했다는 데 그 의의가 있다(허남순 외, 2002: 18-19, 531-534). 이 협약의 내용 중 아동권리의 법적 맥락과 관련되어 더욱 밀접하게 적용될 수 있는 내용은 3조와 12조이다(Bilson and White, 2005). 3조의 경우, 당사국이 공식적으로 아동의 최선의 이익을 법적으로 수행할 있도록 해야 하며, 그 구체적인 절차 역시 확립되어야 함을 명시하고 있다. 3조의 이 내용은 아동보호를 위한 사회구성주의적 가치라고 할 수 있는 참여와 협상이 구현되도록 당사국의 실정법 개정에 대한 지침이 된다. 허남순 외(2002)는 아동의 성장·안전·지위와 관련되어 발생

하는 모든 사건의 처리와 절차 및 법적 과정이 확립되어야 하며, 더 나아가 실정법 적용에서 발생하는 법적 상충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기 위한 법적 체계를 갖추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소송 과정에서도 아동의 최선의 이익이 소홀히 다루어지지 않도록 모든 공법·민법의 체계를 갖추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동 협약 12조는 연령, 성숙도와 상관없이 아동의 견해를 경청하고 주의해야 하며, 의사결정에서 연령과 성숙도를 비중 있게 고려해야 함을 적시하고 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연령과 성숙도만이 아동견해의 비중을 고려하는 요소일 뿐, 그 외 다른 요인은 제외되어야 한다는 것이다(Bilson and White, 2005). 따라서 연령과 성숙도에 따른 비중을 현실적으로 어떻게 고려하여 법적으로 반영할 것인가가 중요하다.

실제로 1990년대 이 협약에 비준한 많은 국가들은 아동을 자신의 복지에 영향력을 지닌 시민으로 간주하고자 하였으며, 아동의 견해를 반영하고 참여할 수 있는 공식적인 절차를 고안하여 실행하였다(Ennew, 2008). 물론 아동의 견해를 표현하는 방법과 후견인 등을 통하여 아동의 최선의 이익을 설명하도록 하는 방법은 국가마다 상이하였다. 예를 들어, 호주나 뉴질랜드는 아동이 직접 법적 진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국가이며, 프랑스에서는 사법부가 아동보호 의사결정의 초기단계에서부터 조언을 하는 역할을 하기도 한다(Bilson and White, 2005). 구체적인 방법이 국가마다 동일하지는 않더라도, 아동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참여가 정당하며, 아동의 대리인이나 후견인, 또는 사회복지사 등의 전문가들은 양육자를 대상으로 최대한의 협상과 참여가 보장된 아동보호를 이룰 수 있도록 한다는 점은 동일하다. 또한 참여와 협상이라는 사회 구성주의적 가치가 실정법 내에서 구현되도록 되어 있다는 것도 알 수 있다.

오늘날, 아동보호 관련 법률의 입법과정에서 아동과 가족의 참여를 보장하고, 아동역시 협상에 임할 수 있는 당사자로 인정해야 한다는 인식이 확장되고 있다(Healy, 1998; Pennell, 2006). Ferguson(2004) 역시 현대의 아동보호사업은 아동의 참여를 보장함으로써 민주적 가족이 증진되어야 한다고 보았다. 아동보호사업에서 이러한 참여는 학대피해아동이나 학대자의 의사결정을 무조건적으로 받아들인다는 의미가 아니라(Cameron and Freymond, 2006), 서비스 사용자로서 그들의 의견을 경청하고 주의를 다한다는 것이다(Cashmore, 2002; Sanders and Mace, 2006). Hallett와 Darlington(2009)은 아동보호 실천가는 아동과 가족의 참여를 통하여 학대 가족의 맥락을 이해할 수 있으며, 동시에 아동과 가족 역시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의사결정과정을 받아들일 수 있게 된다고 보았다. 또한, 이러한 경청과 소통을 통하여 아동중심 개입의 가치가 인정받으며, 아동과 가족은 외부인들과 협동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게 된다고 보았다.

한편 Magnuson 외(2012)는 협상이란, 관련된 사람들의 목표와 실익을 실현하는 과정을 의미하는 정치적 개념으로 규정하였다. 또한 상반된 욕구와 목적을 지닌 아동과 가족을 참여하도록 하여 문제를 해결해 가는 아동보호사업의 과정이 바로 협상이라고 주장하였다. 또한, 아동과 가족이 꾸준히 회의에 참석하여 그들의 욕구를 조정해 가는 과정과, 전문가들이 공조를 이루고 이견을 좁혀가는 과정 역시 협상이라고 보았다(Magnuson et al., 2012). 특히 아동보호사업에서 아동과 가족의 참여라는 것은 실정법에 근거한 협상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실질적 의의를 지닌다(Ferguson, 2009). 무엇보다 가족의 민주적 관계를 지향하는 현대사회의 특징을 감안할 때, 아동을 협상당사자로 간주하

는 정도는 우리 사회가 아동을 정당한 구성원이자 참여권을 지닌 존재로 보장하는 일종의 지표가 될 것이다.

한편, 학대자들은 전문가들의 접근을 회피하거나, 아동보호과정에 참석하거나 아동보호 실천가와의 협상에 저항하는 경우가 많다(Trotter, 2006: 3-4). 또한 아동보호전문기관은 아동과 가족의 비자발성과 저항을 극복하고, 아동학대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과제상황을 자주 경험해 왔다(Ferguson, 2001). 따라서 성공적인 아동보호사업을 이루기 위해서, 아동학대 문제와 관련된 당사자들이 협상 테이블에 등장할 수 있도록 만드는 법률과 제도의 구축이 핵심일 것이다(Ferguson, 2009).

이러한 이유로 아동학대를 극복하고 민주적 관계의 가족을 이루기 위하여 Ferguson(2001)과 Featherstone(2004)은 아동을 협상당사자로 인정하고 아동과 가족을 참여하도록 법제화된 공적개입이 반드시 구현되어야 한다고 보았다. 이를 통하여 아동은 자신의 최선의 이익에 관하여 말할 수 있고 행동할 수 있는 주체적 존재임을 인식할 수 있을 것이다.

2) 우리나라와 외국의 아동보호사업에서 참여와 협상 검토

Healy(1998)는 아동보호사업에서 아동과 가족의 참여라는 것은 법에 명시된 책임 역할이며, 때로는 그들의 욕구와 대치되더라도 아동의 안전을 우선하여 이루어져야만 참여의 의의가 있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아동보호사업에서 이루어지는 참여는 사회적 미덕의 수준을 넘어서는 법적인 책임이며, 아동과 가족의 참여는 서로 대립적일 수 있다고 보았다(Healy, 1998). 이로 인하여, 아동보호전문기관은 아동학대 문제해결을 위한 대립적 사법제도(adversarial judicial system)를 활용하기 시작하였으며, 그 효과성을 인정받고 있다(Archard and Skivenes, 2009). 이 방법은 대립적 관계에 있는 아동과 가족 모두를 공정하게 사법적 절차에 참여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며(Hallett et al., 2011), 다음과 같이 다양한 형태로 존재한다.

아동의 참여를 보장한 외국의 대표적 방법으로 스코틀랜드의 아동문제청취제도(Children's hearing system)를 들 수 있다(황옥경, 2002; McGhee and Waterhouse, 2002; Archard and Skivenes, 2009). 이 제도는 1995년 아동법(Children act 1995)에 근거하여 만들어졌으며, 위험에 처해 있거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아동의 견해가 반드시 표명될 수 있도록 법적인 강제조치를 제시한 것이 주요골자이다. 아동문제청취제도는 '아동권리에 관한 국제협약'에서 제시한 아동의 참여권을 강조하고 있으며, 이 협약에서 제시한 아동의 참여권이 국내법에 적용되고, 아동보호사업에 구현될 수 있도록 고안된 장치 중 하나로 평가받는다(Littlechild, 2000). 또한 아동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의 아동청취위원회와 아동, 가족·리포터·사회복지사를 포함한 전문가들이 아동문제청취위원회에 참석하며, 아동과 부모 역시 아동청취위원회의 모든 단계에 참석할 의무가 있다(황옥경, 2002). Vincent 외(2010)는 아동문제청취제도에서 아동의 참여를 법제화한 것은 '아동권리에 관한 국제협약' 중 아동은 자신의 삶과 관련된 결정에 참여해야 한다는 아동의 참여권을 현실적으로 구체화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하였다. 또한 참여하는 아동의 권리는 '아동권리에 관한 국제협약' 중 보호받아야 하는 아동의 권리 즉, 아동 보호권과 밀

접한 관련이 있다고 하였다(Vincent et al., 2010). 즉, 아동의 참여를 법제화해야만 아동의 참여권 그 자체가 의미를 가질 뿐만 아니라 아동의 보호권까지 구현될 수 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아동보호사업에서 아동과 가족의 공정한 참여를 보장한 대표적인 제도로서 뉴질랜드의 가족 집단회의(family group conference)가 존재한다(Bilson and White, 2005). 처음 이 제도는 뉴질랜드 정부가 사회적으로 배제되어 있었던 마오리 부족의 아동보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그 부족문화의 하나였던 가족회의 전통을 전체 아동보호법에 반영하였던 것에서 시작되었다. 이 제도의 근거는 뉴질랜드의 1989년 아동과 청소년 및 그들의 가족법(Children, Young Persons and Their Families Act of 1989)이며, 현재 가족집단회의는 뉴질랜드 뿐만 아니라 미국이나 캐나다, 호주 등의 국가에서 아동학대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으로 활용되고 있다. 이 제도에서 가족은 아동의 안전과 보호를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확실히 하기 위하여, 사회복지사와 함께 토론을 해야 한다(정은주, 2008). 또한 가족참여를 통해 가족의사결정을 이끌어내며, 회의에 참석할 수 있는 구성원을 법에 의해 규정하고 있다. 회의를 주관하는 전문코디네이터는 가능한 한 많은 가족 구성원들이 참석할 수 있도록 한다(Morris and Connolly, 2012).

Ludbrook(1999)은 가족집단회의에서 가장 두드러지는 점은 아동과 관련된 모든 사법절차에서 아동을 옹호하기 위하여 변호사를 활용하고 있다는 것이며, 후견인이나 입양 및 학대문제와 관련된 모든 사법과정에서 반드시 변호사가 아동을 옹호하고 대표하도록 법제화되어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제도의 중심이 되는 변호사가 제대로 된 역할을 수행하지 않을 때 아동은 무방비 상태에 놓일 수 있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한다(Ludbrook, 1999). 가족집단회의가 완벽한 제도는 아니라는 점에서 앞으로의 개정작업이 요구되지만, 적어도 아동의 장기보호에 효과를 가져왔으며, 무엇보다 가족집단 회의라는 공식적 절차에 아동과 그 가족의 참여가 법제화되어 있다는 점을 주목해야 할 것이다.

한편, 영국(England and Wales)의 경우, 구타아동증후의 발견으로 인하여 1980년대 중·후반까지 아동보호사업은 병원에서 아동학대를 판정하는 것이 주요 업무였으나, Cleveland 사건으로 인해 드러나지 않는 아동의 상해일지라도 아동의 언어와 감정 상태 등으로 아동학대를 판정하게 되었다(Parton, 1997: 40-43). 가시적인 신체적 상해 정도로만 학대를 판단하게 될 경우, 아동은 그들의 욕구를 충분히 설명할 겨를도 없이, 아동보호서비스가 성급히 종료될 우려가 있었다는 것을 인정한 셈이다(Forsberg, 1999). 영국 사회는 Cleveland 사건을 아동의 적극적인 참여와 자기표현의 권리를 인정하고, 협상의 당사자로 사회적 인식을 가지게 된 계기로 만든 것이다(Valman, 1988). 이로 인하여 1989년 아동법은 아동보호문제에 대한 가족참여를 공식화하였다. 아동보호 실천가들은 의사결정 과정에 아동과 가족의 참여가 반드시 이루어지도록 해야 하기 때문에 그 책임이 무거워졌다. 이 법에 근거하여 가족이 아동보호 각 단계에 완전히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된 것이다(Hallett et al., 2011). 또한, 동 법은 아동학대 학대자와 피해자라는 극단적인 이분법적 관점으로 학대 피해아동과 가족을 바라보는 기존의 시각을 극복하고, 아동보호 각 단계에 아동보호 실천가와 함께 적극 참여해야 하는 파트너로 인정하였다(Lupton, 1998). 영국의 이 법 역시 중요한 점은 아동과 학대자까지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하도록 만든 법적 강제조치가 있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조사자가 조사를 위한 아동접근을 거부당하거나 아동의 주거지에 대한 정보제공이 거부되는 경우, 학대자에게 단

계적인 법적 불리를 적용하여 반드시 참여하도록 하고 있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응급보호명령, 아동조사명령, 보호명령 또는 감독명령 중 하나를 신청할 의무이자 권리가 사회복지사에게 있음을 법적으로 명시하고 있다(장영인, 2007). 지금까지 언급한 외국의 아동보호사업의 참여와 협상의 방법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 2> 외국의 아동보호사업과 관련된 참여와 협상의 방법

	아동의 참여와 협상	가족의 참여와 협상
스코틀랜드 아동문제 청취제도	· 아동문제청취위원들이 아동의 견해를 반드시 청취하도록 법제화(1995년 아동법)	· 부모(가족)가 아동청취위원회의 모든 단계에 참석할 의무 법제화(1995년 아동법)
뉴질랜드 가족집단회의	· 후견인·입양·학대와 관련된 모든 사법절차에 아동을 옹호하는 변호사 선임 법제화(1989년 아동·청소년 및 가족법)	· 가족은 아동의 안전과 보호를 위한 협상을 사회복지사와 할 것을 법제화(1989년 아동·청소년 및 가족법)
영국(England & Wales) 아동법	· 클리블랜드사건 이후 아동의 참여와 협상 및 자기표현 법제화(1989년 아동법) · 아동보호실천의 각 단계에 참여할 수 있도록 아동의 권리강화 법제화(1989년 아동법)	· 학대혐의자일지라도 아동보호실천의 각 단계에 참여할 수 있도록 법제화(1989년 아동법) · 학대자가 참여를 거부하지 못하도록 단계적인 법적 불리 적용(사회복지사의 응급보호명령·아동조사명령·보호명령 또는 감독명령을 법적으로 명시)

우리나라도 2000년 아동복지법 전면개정에서 아동학대 관련 규정을 신설하고 입법화하여, 아동학대를 예방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아동학대에 대한 공적 개입의 기초를 마련하게 되었다(김현옥, 2006). 친권소송과 관련한 공적개입의 근거로서, 아동보호전문기관 장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친권행사제한 또는 친권상실의 선고를 청구하도록 요청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러나 아동복지법의 개정내용과는 달리 아동학대 문제의 사법적 절차에서 아동의 참여가 보장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구체적으로, 이현재(2009)는 우리나라에서 친권상실 소송의 당사자는 지자체의 장으로 엄격히 제한되고 있는데, 정작 지자체의 장은 현실적으로 아동학대의 적나라한 상황을 미처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고 하였다. 또한 아동보호를 위해 친권상실 선고의뢰를 요청하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으로부터 지자체의 장으로까지의 행정체계가 차단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아동은 자신의 생명과 관련한 학대문제에 대한 참여를 법적으로 보장받지 못하고 있으며, 합법적인 협상당사자로 인정받지도 못하고 있다(이현재, 2009; 문영희, 2010).

또한 우리나라에서 친권상실선고 심판청구를 제기할 수 있는 자로 민법 제924조는 제777조의 규정에 의한 친족 또는 검사를 규정하고 있고, 아동복지법 제12조는 아동이 18세 미만인 때에는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도 청구인 자격을 부여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현행법상 미성년인 자는 민법 및 아동복지법상 친권상실 선고 심판청구를 할 수 있는 당사자 자격²⁾이 없는 셈이다(이은정,

2) 학대받은 아동이 양육자의 친권상실 소송에서 그 정당한 당사자(proper party)가 되기 위한 실정법

2010). 또한 실체법적으로 친권자와 그 자녀 사이에 이해 상반된 아동학대 등과 같은 문제가 발생했을 때, 특별 대리인의 선임 신청권을 친권자(또는 후견인)가 가지도록 되어 있다. 즉, 미성년자 본인은 특별대리인 선임신청권이 없다(이현재, 2009). 이와 같이 우리나라는 아동학대에 대한 사회적 문제 의식이 제기되어 아동복지법의 신설로 이어지기는 하였으나, 법적 구동체계가 아동의 참여를 외국보다 제한하고 있는 부분이 많다고 여겨진다. 아동은 자신을 학대한 부모의 친권과 관련하여 소를 제기할 수도 없으며, 후견인을 지정할 수도 없는 한계로 인하여, 당연히 참여와 협상의 주체가 될 수 없는 현실이 존재한다.

4. 사회구성주의적 관점에 의한 우리나라 아동보호사업의 함의

1) 초점집단토론의 경위와 참여자의 일반적 배경

거시적인 정책환경이 미시적인 사회복지실천에 미치는 영향과 그 현실을 분석하기 위하여 아동보호 실천가들의 의견이 법과 제도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사회구성주의적 접근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사회구성주의적 가치인 협상과 참여에 대한 아동보호 전문가들의 종합적인 의견을 경청하기 위하여 초점집단토론을 실시하였다. 또한 상반된 입장인 아동과 학대자를 공정하게 참여하도록 하기 위한 대립적 사법제도를 아동보호과정에서 활용하고 있는 외국의 제도를 검토하고 평가하는 것 역시 중요하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에 아동보호 실천가들의 의견은 중요하다(Hallett, et. al., 2011). 따라서 아동보호를 직접 실시하고 있는 현장전문가로서 아동보호전문상담원과 사례관정위원 등으로 간접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관련 연구자들을 중심으로 집단토론(focus group study)을 실시하였다. 경상남·북도 소재 아동보호전문기관을 중심으로 참여자를 모집하였으며, 3회의 토론회가 실시되었다. 모두 11명의 전문가가 참여하였으며, 성별로는 남성과 여성이 각각 5명, 6명이며,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근무한 경력은 평균 6.38년으로 나타났다.

상의 조건은 다음과 같다. 첫째, 실질적 이익 당사자(real party in interest)가 되어야 하며, 둘째, 소송을 제기하거나 소송을 받을 법적 능력(legal capacity)을 인정받아야 하며, 셋째, 당사자 적격(standing) 등의 3가지 기본적인 전제요건을 충족해야 한다(Friedenthal et al., 2010). 이 중에서 특히 소송능력은 소송을 제기하거나 소송을 받을 능력으로서 타인의 도움 없이 소송에서 자신의 이익을 대변할 수 있는 개인별 능력이다. 만약 아동이 미성년자 등의 이유로 소송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 소송후견인 등에 의해 친권상실 소송이 제기되어야 한다.

〈표 3〉 전문가집단 토론 참여자의 일반적 특성

연 번	성별	소속/직무	경력	토론 참석회수(참석회기)
1	남	아동보호전문기관/관장	아동보호 8년	3(1, 2, 3)
2	여	아동보호전문기관/ 아동보호전문상담원	아동보호 6년	3(1, 2, 3)
3	여	아동보호전문기관/ 아동보호전문상담원	아동보호 6년	3(1, 2, 3)
4	남	아동보호전문기관/ 아동학대전문상담원	아동보호 6년	2(2, 3)
5	남	아동보호전문기관/ 아동학대전문상담원	아동보호 7년	3(1, 2, 3)
6	여	아동보호전문기관/ 아동학대전문상담원	아동보호 5년	3(1, 2, 3)
7	여	아동보호전문기관/ 아동학대전문상담원	아동보호 6년	3(1, 2, 3)
8	여	아동보호전문기관/ 아동학대전문상담원 (2011. 4. 퇴직)	아동보호 7년	3(1, 2, 3)
9	남	I 대학교/ 아동학대 사례판정위원	조교수 4년	3(1, 2, 3)
10	남	J대학교/ 아동학대사례판정위원	조교수 3년	2(1, 3)
11	여	K 대학교/ 아동학대사례판정위원	부교수 4년	2(1, 3)

토론은 2011년 총 3회 이루어졌다. 토론의 중심 내용은 연구문제1과 연구문제 2에 대한 검토를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참여자들이 외국의 아동보호사업에서 참여와 협상의 법적·제도적 사례를 충분히 검토할 수 있는 자료를 요청하여, 3회차 전 별도의 간담회를 통하여 본 연구에 소개된 외국의 내용을 발표한 후 자료를 검토하여 3회차 토론에 참여하도록 하였다. Morgan과 Krueger가 지적한 전문가 집단 토론의 회차 별 후속자료의 일부로서 정보지를 제공하는 경우는 흔히 발생하는데, 이 과정에서 연구자가 자신의 생각이나 주장을 암시적으로 드러내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는 유의사항을 받아들였다(신경림 외 역, 2004). 외국의 법적 조항 중심으로 소개하고 관련된 객관적 자료를 배부하는 데 중심을 두었으며, 연구자의 생각이나 주장을 암시적으로 언급하거나 강요하지 않고자 하였다.

〈표 4〉 전문가집단 토론 경과

회차	토론일자	내용
1	2011. 4. 2	· 사회구성주의의 가치로서 참여와 협상에 대한 평가와 검토
2	2011. 4. 23	· 아동보호사업에서 아동학대자의 참여와 협상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가? · 아동보호사업에서 학대피해아동의 참여와 협상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가?
3	2011. 6. 1	· 외국과 비교하였을 때 우리나라의 아동보호사업에서 아동과 가족이 참여하고 협상하도록 하기 위해 어떤 변화가 있어야 하는가?

2) 분석 및 논의

(1) 사회구성주의의 가치; 참여와 협상을 통한 민주적 관계의 재구성

“가뜩이나 위압적인 학대자들이 자신들의 가부장적 요소에 대해 별 문제의식이 없으니까..아이와 말로 해서(대화를 통하여) 자기 뜻을 바꿔간다..이런 생각 절대 안합니다. 아이와 부모의 관계가 다시 이루어져야 한다(재구성)..뭐 이런 생각은 전혀...(참여자 4)”

“사회복지사들도 아동이 순종적이지 않을 때는 당연히 맞아야 하는 거 아닌가..지가 문제가 있으니까 맞겠지. 이런 말을 자주합니다..근데 문제가 있으면 맞아야 합니까? 애니까 맞아야 하는 게 아니고?(애니까 맞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게 아닌가?) 놀랍죠. 또한, 부모니까 때린다 식으로 말할 때 보면 실천가들도 학대자 같은 인간 많구나...(참여자 1)”

참여자들은 아동보호사업에서 가장 중요하게 간주되는 사회구성주의적 가치는 아동과 가족의 민주적 관계를 실현하기 위한 참여와 협상이라 것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었다. 다만, 우리나라의 가부장적 문화의 특성으로 인하여 민주적 관계를 제한하는 문제가 발생하며, 아동과 양육자의 민주적 관계 구축이 저해될 수 있다고 보았다. 심지어 사회복지사일지라도 아동을 학대유발의 책임자로 여기는 시각까지 있음을 진술하고 있었다.

앞서 언급한 Giddens(김경호 외 역, 2012: 123-144)의 사회문제를 규정하는 권력의 속성을 감안할 때, 우리나라는 그 자체의 심각성을 통하여 아동학대를 사회문제로 규정하기보다, 가부장적 문화와 가부장적 권력구조의 영향에 의해 아동학대의 심각성이 보다 축소되어 사회문제로 규정되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참여자 4번의 진술을 보면, 아동학대의 문제에 대한 전문가들의 인식조차 피해를 비난하는 태도를 보일 때가 있거나 가부장의 과잉권력을 당연하게 받아들일 때가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학대자랑 아동 모두와 꾸준히 의논하고 합의점을 찾아가고 또 모니터해가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참여자 5)”

“이 일을 계속 하다 보니 정말 나쁜 부모, 아동과 영원히 분리되어야 하는 부모는 소수이고..대부분은 아동을 어떻게 다루어야 할지를 모르고, 자기가 아이한테 어떻게 해야 한다는 것을 모르고 있다는

것 자체를 모르고 있어요. 그래서 학대자들을 비난하기보다 아동학대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 끌어들이야 해요.(참여자 1)”

참여자 5번과 참여자 1번의 진술내용은 앞서 언급한 Munro(2011)와 Saltiel(2013)의 주장과 유사하다. Munro(2011)는 가족의 변화된 정도가 아동보호현장에 반영되어야 하며, 아동이라는 존재가 성인과 동일한 인권을 지닌 존재로 가족과 아동보호현장에서 받아들여져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우리나라와 같이 가부장적 가족주의를 지닌 국가에서 Munro(2011)의 주장과 참여자 5, 1의 진술은 아동보호사업에서 지향해야 하는 가족의 의미를 재구성하며, 아동보호전문기관과 가족의 소통을 강조한다. 또한 가족의 개념은 더 이상 가부장이 통제하고 다스려야 하는 영역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며, 아동보호전문기관은 아동 및 가족을 파트너십의 대상으로 여겨야 함을 나타낸다.

한편 민주적 관계 구축의 방법으로서 참여자 1은 Saltiel(2013)과 동일하게 참여를 언급하였다. 특히 참여자 1의 진술은 아동의 협상지분을 인정하고, 참여자로 보는 기본적인 새로운 패러다임이 요구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2) 학대자의 참여와 협상; 학대자의 참여를 강제할 법적 근거가 부족함

“장애아동 전담 어린이집 원장이 아이가 맞아서 피멍 든 모습으로 어린이집 오는 거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서 신고를 하긴 하지만 아동보호전문기관이 뭐 할 수 있느냐고..학대자를 바꿀 수 있느냐고..말문이 막히더라고요..신고를 하라고 하지만, 신고를 받았을 때 학대자의 변화를 기대하는 신고자들에게 어떠한 확신을 줄 수 있는지 회의가 생기네요..(참여자 2)”

학대자가 참여를 거부하고 저항하면 문제해결은 큰 난항을 겪게 되고, 학대피해아동은 아동학대 신고 전 보다 더 큰 학대를 겪게 될 가능성도 발생할 것이다. 이러한 문제 때문에, 아동보호 실천가들은 학대자의 참여가 관건임을 알고 있었다. 참여자 2는 신고자가 학대자에 대한 실질적인 조치를 요청하였지만 장담할 수 없는 현실을 진술하고 있다. 앞서 언급한 Swift(1995)는 공적개입을 통해서만 아동보호현장이 보다 공정하게 아동과 학대자의 참여를 이끌어낼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즉, 법과 제도에 근거한 공적개입이 아동과의 협상 및 참여의 전제가 될 것이다.

앞서 언급한 Healy(1998)는 아동보호사업에서 참여라는 것은 법에 명시된 책임 역할이라는 점을 강조하였다. 학대자의 참여는 법적인 의무이며, 이 맥락이 실정법에 반영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Healy, 1998). 절대로 회피할 수 없으며, 반드시 받아들일 수 밖에 없는 책임 사항으로 참여를 언급하는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참여자 2의 진술 내용은 상당부분 Healy(1998)의 주장과 동일하다고 여겨진다. 또한, 참여자 2 역시 아동보호사업에 학대자가 반드시 관여되도록 해야 하는 법적인 장치들을 요구하고 있다.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참여하지 않을 경우 처벌이 있다는 강제조항이 있어야 하는 이유는 강제 그 자체를 위해서가 아니라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죠. (학대자를) 처벌하고 싶은 사회복지사가 어디 있

겠습니까? 뉴질랜드의 가족집단회의 같은 경우, 학대자의 참여를 이끌어낼 수 있는 건 결국 그 집단회의가 법제화되어 있다는 거예요.(참여자 5)”

참여자 5는 뉴질랜드의 가족집단회의의 법제화에 초점을 두어 진술을 진행하였다. 이 진술내용은 앞서 언급한 정은주(2008)와 Ludbrook(1999)의 연구내용과 유사하다. 이들 모두 뉴질랜드의 가족집단회의는 회의진행이나 구성내용 그 자체보다 법제화되어 있다는 것에 의의를 두고 있다.

“아동보호전문기관 담당 공무원은 강제로 격리하지 않고 할 수 있는 걸 해보라는 식으로 말하는데, 우리도 부모의 자발적 협조를 최대한 이끌어내고 싶죠.(참여자 4)”

“사실 현장조사 할 때만 해도, 우리가 거의 무단으로 들어가거든요, 부모들이 아직 그런 거까지 문 제삼지 않으니까 가능한거지..조사할 때마다 조사를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강제력이 있어야 되구요..강 제력이 없는 조사는 정확성을 담보할 수 없구요..(참여자 3)”

아동보호사업에서 중시하는 사회복지사는 아동학대자의 저항과 비자발성을 경험하였을 것이다. 참여자 4와 3의 이러한 진술내용은 아동보호과정에서 빈번히 발생하는 학대자의 저항과 비자발성을 언급한 Trotter(2006)의 보고와 유사하다. Trotter(2006)의 주장대로, 아동학대자가 전문가들의 접근을 제한하거나, 전문가들의 면접 요청에 저항하는 것은 모든 국가의 공통사항일 것이다. 중요한 것은 학대자들의 참여를 현실화하여 협상에 참여하도록 만드는 법과 제도의 설정일 것이다(Ferguson, 2004). 또한 참여자 4와 3은 상반된 욕구를 지닌 아동과 가족을 동시에 참여하도록 해야 하는 아동보호사업의 협상적 본질을 지적한 Magnuson 외(2012)의 주장과 동일하다. 학대자가 참여하고 협상해야만 아동보호의 문제는 해결되며, 결과적으로 학대자의 참여와 협상을 강제할 수 있는 법적 장치가 요구된다는 것이다.

(3) 아동의 협상; 아동은 협상당사자로 인정받지 못함

“아동은 부모를 의식해서 의사표현을 하기 때문에 경청이 참 중요한데..사실 아동을 사례회의에 앉힌 적이 없습니다. 그냥 담당 사회복지사가 먼저 아동을 만난 후 그 내용을 사례판정회의에 들려주는 정도..(참여자 6)”

“생각보다 아이들이 예민하고 생각이 복잡해서..단순히 사회복지사의 마인드에 호소할 것이 아니라 아동의 참여와 협상을 법제화해야 해요. 스코틀랜드의 아동문제청취제도의 경우, 법제화되어 있는 것도 의의가 있지만, 아동을 경청해야만 문제해가 해결된다는 철학이 전제된 거 아닌가요..(참여자 2)”

참여자 6은 아동보호사업에서 아동이라는 존재가 어떻게 여겨지고 있는가를 진술하고 있다. 이러한 참여자 6의 문제의식은 앞서 언급한 Ferguson(2003)과 Easter 외(1994)의 주장과 유사하다. Ferguson(2003)과 Easter 외(1994)는 아동은 성인에게 종속되는 존재로 인식되는 경향 때문에, 자신의 삶이 결정될 수 있는 학대문제에 대하여 협상지분을 갖지 못하는 결과에 이르렀다고 본다.

또한, 참여자 2의 진술은 Bilson과 White(2005)의 연구결과와 일치된다. 구체적으로, 아동의 성숙과 발달의 정도는 참작되어야 하되, 기본적으로 아동의 견해는 경청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참여자

2는 아동 견해에 대한 경청을 법제화하기 위한 구체적 방편으로 스코틀랜드의 아동문제청취제도를 언급하면서, 이 제도가 아동의 참여를 법제화했기 때문에 참고할만하다고 하였다. 사실, 스코틀랜드의 아동문제청취제도는 아동을 경청하기 때문에 의의가 있다고 여겨지는 것도 맞지만, 더 정확히는 법제화되어있기 때문에 아동문제에 대해 전문가들이 경청할 수 있다고 여겨진다(Littlechild, 2000; Bilson and White, 2005; Vincent et al., 2010). 이 점에 대하여, Cashmore(2002)와 Ferguson(2003), Archard와 Skivenes(2009) 등도 아동에 대한 경청과 아동 참여는 아동보호 실천가 개인의 성실함만으로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다.

한편, Vincent 외(2010)는 스코틀랜드의 아동문제청취제도는 ‘아동권리에 관한 국제협약’을 지키기 위하여 법제화한 것이라고 하였다. Vincent 외(2010)의 보고와 참여자 2의 진술을 토대로, 우리나라에서도 아동의 견해를 경청하기 위해 가장 우선 요구되는 것은 법제화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참여자들의 다음의 진술을 보면 우리나라에서 아동 참여의 법제화를 가로막고 있는 것은 바로 법임을 알 수 있다.

“친권상실 재판과정에서 아동의 협상지분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 아동에게 가장 치명적입니다. 학대 피해아동이 학대자를 대상으로 직접 소송을 제기할 수 없도록 되어있고, 아동보호 전문가라고 불리는 우리도 소송을 제기할 수 없고, 학대자인 부모 혹은 검사가 아동의 법정 대리인을 선임하도록 되어 어요, 생존문제인데 아동의 협상 권리는 보장받지 못하는 거죠.(참여자 7)”

참여자 7의 진술 내용은 우리나라의 아동학대 문제와 관련하여 오랫동안 지적되어 온 문제이다(김유미, 1996; 이현재, 2009; 문영희 2010; 이은정, 2010). 이는 아동관련 소송이라는 동일현상에 대하여 아동복지법과 민법의 불일치가 해결되지 않은 탓이다. 구체적으로, 아동이 그 발달적 한계로 소송능력이 제한될 경우 적절한 대리인에 의해 소송이 제기되어야 하는데, 우리나라는 아동복지법상 그 소송대리인이 지자체의 장으로 제한되어 있으며, 지자체의 장은 아동학대의 구체적인 상황을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 실효성이 적을 수 밖에 없다(이현재, 2009; 문영희, 2010). 문영희(2010)는 우리나라의 아동은 아동학대라는 자신의 생명과 관련한 문제에 대한 참여조차 할 수 없다고 비판하였다. 이은정(2010) 역시 우리나라의 아동은 민법 및 아동복지법에 의해서 친권에 대한 심판정구를 할 수 있는 당사자 적격을 갖추지 못하고 있는 한계가 존재한다고 하였다.

아동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아동권리에 관한 국제협약’의 당사국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국내 실정법에서 아동의 인권과 협상자격을 실질적으로 보장하지 못한다면 협약 비준의 진정성은 의심받을 수 밖에 없을 것이다. 즉, 우리나라는 표면적으로는 아동권리를 향상시키기 위한 국제협약의 당사국이지만, 국내 실정법상으로는 아동의 인권을 보장할 수 없는 흠결을 지니고 있는 불일치의 면모를 보이고 있다. 결과적으로, 우리나라의 실정법에서 아동은 권리적 존재로 간주되지 않는다. 아동을 권리적 존재, 협상 당사자로 규정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법적인 뒷받침이 있어야 한다. 법과 제도가 구축되지 못한 상황에서, 아동보호 실천가들에게 아동학대 문제를 해결하기를 바란다는 것은 또 다른 사회적 억압이라고도 볼 수 있다. 아동학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실천가들의 노력이 반드시 요구되지만, 그 전제가 되는 법과 제도의 문제를 외면하지 않아야 한다.

(4) 우리나라의 아동보호사업 관련 법 조항의 개정방향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지자체의 장을 경유하지 않고 직접 사법부에 학대자의 친권을 제한하거나 상실할 수 있는 신청을 할 수 있어야죠.(참여자 9)”

“아동의 소송능력을 인정하거나 아동보호전문기관측이 후견인이 될 수 있도록 민법이 개정되어야죠. 부모가 학대자인데도 부모가 아동의 후견인을 지정하도록 한다는 건 모순이죠.(참여자 10, 12)”

참여자 9는 친권제한이나 상실의 조치를 아동보호전문기관 측에서 직접할 수 있도록 아동복지법의 개정을 요구하고 있다. 또한 참여자 10,12는 민법에서 아동의 소송 후견인으로 아동보호 실천가가 될 수 있도록 개정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아동학대와 관련한 친권소송에서 아동보호 실천가들이 법정 후견인이 될 수 있는 내용으로 아동의 협상지분을 획득해야 할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의 아동보호 관련 법조항은 아동과 학대자의 공정한 참여와 협상을 할 수 없도록 되어있다는 것이 가장 큰 난제이다. 따라서, 참여자 9, 10, 12의 진술대로 아동복지법과 민법이 개정되어야 함은 논의의 여지없이 당연한 사실이다(이은정, 2010). 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나라가 현재 개정을 미루고 있는 원인이 무엇인지에 주목해야 한다. 구체적으로, 우리나라의 법과 제도가 아동을 여전히 성인 소유의 대상으로만 보는 가부장적 성향과 사회적 인식의 결과일 가능성을 통찰해야 할 것이다. 또한, 우리나라의 아동보호관련 법체계가 실질적인 내용보다 아동권리에 관한 국제협약의 당사국으로서 최소한의 의무방어정도에 만족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성찰해야 할 것이다.

“법조항을 특정해서 개정하는 것도 중요하지만...학대자가 아동보호전문기관을 면접하지 않을 때 법적 불이익이 단계적으로 있을 것이 예상되기 때문에 참여할 수 있도록..법 조항의 내용 그 자체보다 참여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걸 상기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개정이 이루어져야죠.(참여자 11)”

참여자 11의 진술내용은 법과 제도의 개정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고 여겨진다. 법이 개정되는 것으로 아동보호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참여와 협상의 수단으로서 법과 제도를 학대자가 상기할 가능성을 언급한 것이다. 또한 참여를 하지 않은 학대자에게 처벌을 가하고 불이익을 주기 위한 법의 개정이 아니라, 참여와 협상을 이루도록 하기 위한 일차적 전략으로서 법과 제도의 개정을 의미한다. 아동보호사업에 대한 사회구성주의적 접근의 본질이 학대자를 처벌하고 아동을 부모와 격리하여 보호하려는 극단적 이분법적 접근이 아님을 상기할 때(Lupton, 1998), 참여자 11의 진술은 사회구성주의의 본질을 반영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즉, 학대자가 아동보호의 과정에 강제적으로라도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 극단적인 친권상실 조치를 방지하고자 하는 의도로 여겨진다.

또한 참여자 11의 내용은 앞서 언급한 Forsberg(1999)나 Valman(1988)이 정리한 Cleveland 사건에 대한 영국의 대응과 맥락이 유사하다고 본다. 영국은 Cleveland 사건을 헤프닝이 아니라 법과 제도의 개정을 이루어야 하는 사회적 문제로 받아들였다. 완벽하지는 않더라도, 아동학대 사건을 바라보는 시각을 재구성해서 법적 개정까지 이어졌다는데 의의를 두어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 역시 아동학대에 대한 당사자들의 입장이 공정하게 나타날 수 있도록 사회의 책임을 인식해야 한다. 또한 아동이 아동

보호사업에 공정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법적 개정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5. 결론

본 연구는 우리나라의 아동보호사업에 대한 사회구성주의적 접근을 통하여 그 함의를 도출하고자 이루어졌다. 사회구성주의는 현대사회의 민주적 관계를 제시하는데 적절한 이론적 관점이자 패러다임으로 평가되고 있기 때문에, 유교적·가부장적 특성이 강한 우리나라의 아동학대 문제를 해결하는데 보다 효과적으로 적용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연구문제를 중심으로 요약하면, 첫째, 문헌 연구를 통하여 아동보호사업에 적용될 수 있는 구체적인 사회구성주의적 가치로서 참여와 협상을 도출하였다. 둘째, 참여와 협상의 가치가 다른 나라의 아동보호사업에 어떻게 적용되어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법과 제도의 기반을 중심으로 평가하였다. 스코틀랜드의 아동문제 청취제도와 뉴질랜드의 가족집단회의, 영국의 Cleveland 사건을 계기로 전환된 아동법을 고찰하였다. 또한, 초점집단토론(FGI)을 통하여, 참여와 협상을 검토하고, 외국의 아동보호제도와 우리나라의 아동보호사업 중심으로 토론을 진행하여 함의를 도출하였다.

우리나라를 포함하여 본문에서 언급한 외국 역시 아동의 권리를 처음부터 성인과 동일하게 간주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다만 지금 우리사회는 법과 제도라는 공적 개입을 통해서 아동을 보호해야 하며, 아동의 존재와 그들의 인권을 재구성해 온 다른 나라의 예를 비중 있게 평가해야 하는 시점에 이르렀다고 본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다른 나라의 법제 그 자체를 설명하려하기 보다 법과 제도가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아동의 인권과 아동의 참여를 어떻게 구현하였는가에 초점을 두고자 하였다. 왜냐하면, 아동보호사업과 관련하여 도출된 사회구성주의의 가치인 참여와 협상은 결과가 아닌 과정중심의 가치이며, 사회적 재구성의 산물이기 때문이다. 또한, 앞서도 언급하였듯이 외국의 법과 제도가 완벽하다고 볼 수 없을 것이다. 법과 제도가 정비되더라도 아동학대라는 사회문제는 여전히 존재할 수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Ludbrook, 1999). 우리사회는 아동중심의 법과 제도의 개설이 문제해결의 완료가 아니라는 것과, 여전히 발생할 수 있는 아동학대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고자 하는 과정을 받아들여야 한다. 즉, 아동학대를 해결하기 위하여 법과 제도의 끊임없는 재구성을 시도해야 한다.

한편, 아동보호에 효과적인 외국의 법과 제도 그 결과물만을 우리나라에 그대로 반영하려는 태도 역시 바람직하지 않을 것이다. 영국의 아동법에서 언어야 하는 가치는 국가가 아동보호에 참여적이며, 국내에서 발생한 아동학대 사건을 소홀히 처리하지 않고, 사회변화의 계기로 이끌었다는 것이다. 뉴질랜드의 가족집단회의 역시 유사한 가치를 보여주고 있다. 가족이라는 체계를 존중하였기 때문에 협상할 수 있는 공적 장치를 만들고, 전문가가 아동을 옹호할 수 있도록 하였다. 가족집단회의는 학대자를 성급히 처벌하거나 아동을 분리하려는 시도보다, 아동에 대한 가족의 중요성을 인정하고 아동과 가족의 소통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법으로 여겨진다. 외부 공적체계가 가족에 대해 개입하지 않는 것이 가족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가족의 민주적 관계가 구축되도록 협상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내는 것이 가족을 인정하고 현대사회의 친밀성을 제고하는 방법일 것이다. 법제화된 이 모든 방법이 거부

될 때, 극단적인 소송이나 아동분리가 시도되어야 할 것이다. 이 점은 초점집단토론에서도 충분히 검토된 결론이다. 참여자들은 학대자를 처벌하고 아동을 분리하기 위한 법제화가 아니라, 학대자를 참여하도록 하고 아동을 보호하기 위한 법제화를 요구하고 있었다.

한편 초점집단토론의 참여자들은 아동보호 실천가로서 자신들의 권한이 강화되거나 좀 더 우월한 직무여건을 바라는 진술보다 아동의 인권을 중심으로 우리나라 아동보호사업의 현실에 대한 토론을 진행하였다는 점에 의의를 둘 수 있다. 참여자들은 아동과 학대자의 참여를 이끌어내기 어려운 우리나라의 제도적 한계가 아동보호 직무의 큰 문제로 이어지고 있다는 것에 이의가 없었다. 친권관련 소송이 우리나라에서 빈번히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을 감안할 때, 소송까지 진행되는 아동보호사건의 경우, 아동은 이미 치명적인 신체적 상해와 심리적 손상을 가질 수밖에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동의 권리를 제한하는 법적 모순이 존재한다는 것은 사회적 위험이며, 사회적 방치라고 여겨진다. 친권과 관련한 소송을 경험한 참여자들 역시 관련 법률의 조속한 개정이 있어야만, 극단적인 학대에서 아동의 생명을 보호할 수 있다고 보았다. 또한, 법과 제도가 미비한 상태에서 친권에 대항해야 하는 아동보호사업을 민간위탁기관 중심으로 수행한다는 것은 매우 난감하다. 아동의 협상권력을 인정하고, 아동과 학대자의 참여를 법제화하지 않으면 사회복지사 개인의 실천기술이나 능력으로는 아동보호사업에서 사회구성주의가 실현될 가능성은 없을 것이다. 상반된 입장의 당사자들 모두 공정하게 아동보호에 참여하도록 하는 것이 가장 요구된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본 연구의 제언과 한계는 다음과 같다. 첫째, 사회문제 규정에 관한 것으로서 학대는 비복지의 정점이기 때문에, 반드시 국가 책임과 공적 개입을 통해 해결되어야 하는 심각한 사회문제로 간주되어야 한다. 또한, 아동은 소중한 존재이며 국가의 미래라는 다분히 구조적·낭만적 개념이 아니라, 아동은 권리적 존재이며 협상과 참여의 주체라는 법적·현실적 개념이 만연되어야 할 것이다. 사회구성주의는 모든 사회 구성원을 시민권을 가진 개인으로 간주하는 시각에서 시작되는 패러다임이다.

둘째, 아동학대사건과 관련하여 아동의 소송자격이 상충되고 있는 아동복지법과 민법의 대폭적인 수정이 있어야 한다. 아동복지법의 경우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직접 친권관련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기관의 권한을 강화해야 하며, 민법의 경우 아동학대 관련한 소송에서는 아동의 발달 상태를 고려한 아동의 당사자 적격을 인정해야 한다.

셋째, 아동보호전문기관이 학대자의 참여를 강제할 수 있는 구체적 법률이 만들어져야 한다. 아동보호에서 관련인들의 참여는 사회적 미덕이 아니라 법적인 의무의 속성을 지니기 때문에, 법적 강제력이 뒷받침 되어야 한다. 영국이 개정된 아동법에 근거하여 학대자의 참여를 강제하기 위한 단계별 처벌조항인 사회복지사의 응급보호명령·아동조사명령·보호명령 또는 감독명령을 개설하였음은 좋은 예가 될 것이다. 우리나라 역시 이러한 제도의 개설을 통하여 학대자들의 협상에의 참여를 촉진할 수 있을 것이다.

넷째, 보건복지부 등의 주무부서는 bottom-up 방식인 아동보호 실천가들로부터 아동과 학대자의 참여가 제한되는 원인과 그 결과를 경청해야 한다. 법과 제도의 개정을 통하여 아동과 학대자의 참여를 이끌어 내고자 한다면, 아동과 학대자를 경험하고 있는 아동보호 실천가들의 의견을 충분히 경청

한 이후 현장에 적합한 변화를 시도해야 할 것이다.

다섯째, 현재 아동복지법과 아동복지법 시행령 중 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원의 자격기준에 근거하여 개발된 100시간의 교육과정에 우리나라 아동보호사업의 거시적·미시적 맥락을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되도록 해야 하며, 우리나라의 아동보호와 관련한 법적 맥락이 한계와 모순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토론하고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이는 아동보호 실천가들이 열과 성을 다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기존의 연구들을 반박하거나 상반된 제언을 하는 것이 아니다. 아동보호 실천가들이 혼란을 극복하고 긴 안목으로 제도와 법의 수정이 이루어지기까지 인내하기 위해서는 자신들이 처한 상황과 현실의 맥락을 이해하도록 하는 것 역시 사회구성주의적 접근이라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한계는 다음과 같다. 거시적인 법과 제도 중심으로 아동보호사업에 대한 사회구성주의적 접근을 시도한 연구이므로 아동보호사업의 구체적인 단계에 대한 사회구성주의를 적용하지 못하였다. 또한 아동학대 신고와 조사, 개입과 종료의 각 단계는 연구의 범위에서 제외되었다. 사회구성주의적 관점에서 아동보호사업 각 단계에 대한 실천가들의 보다 다양한 토론과 현장중심의 연구가 추후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 고주애, 2010, “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원의 소진 경험에 대한 탐색”, 『한국사회복지질적연구』, 4(1): 5-31.
- 권기돈 역, 2010, 『현대성과 자아정체성』, Giddens Anthony, 1991, *Modernity and Self-Identity*, 서울: 새물결.
- 김경호, 2003, “영국 1989년 아동법의 아동학대보호와 가족지원에 관한 연구”, 『진주산업대논문집』, 42: 77-93.
- 김경호 · 김현옥 · 장남서 · 류방 · 박일현 역, 2012, 『사회복지와 비판적 우수실천』, Jones, K., Cooper, B., and Ferguson, H., 2008, *Best Practice in Social Work -Critical Perspectives*, 경기도: 공동체.
- 김미정 · 최말옥, 2012, “아동보호전문기관 퇴직 상담원의 2차적 외상스트레스에 관한 질적 연구”, 『사회과학연구』, 28(3): 153-183.
- 김유미, 1996, “아동권리 실현을 위한 관련법에 관한 고찰”, 『가족법연구』, 10: 407-438.
- 김현옥, 2006, “아동학대에방모형개발을 위한 생태체계적 변인 연구”, 부산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문선화 · 구차순 · 박미정 · 김현옥, 2012, 『한국사회와 아동복지』, 경기도: 양서원.
- 문영희, 2010, “현행 아동복지법에 관한 고찰-특히 아동학대와 관련하여”, 『한양법학』, 21(3): 403-425.
- 변기연 · 오승환, 2009, “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원의 직무만족도 결정요인”, 『아동과 권리』, 13(2): 247-274.
- 신경림 · 장연집 · 김영경 · 이금재 · 최명민 · 김혜영 · 김옥현 · 김영혜, 2004, 『질적연구방법 포커스 그룹』, Krueger, R. A., and Morgan, D. A., 1998, *Focus Group Kit*, 서울: 현문사.
- 이세원, 2008, “아동보호전문기관 사회복지사의 윤리적 딜레마와 의사결정에 관한 연구”, 『한국사회복지학』, 60(1): 53-76.

- 이은정, 2010, “가족제도의 변화와 친자법 개정의 필요성”, 『법학논고』, 33: 377-404.
- 이현재, 2009, “친권상실선고절차에 있어서 자의 당사자 적격과 소송능력”, 『법학논총』, 29(1): 121-148.
- 장영인, 2007, “아동학대에 대한 공적 개입 개선방안에 관한 일고”, 『한국아동복지학』, 24: 35-60.
- 정은주, 2008, “한국 아동보호체계에 있어서의 가족의사결정모델 적용가능성에 관한 연구”, 『한국아동복지학』, 27: 7-35.
- 허남순 · 문선화 · 정영순 · 김현용 · 김미혜 · 이배근 · 배태순 · 조홍식 · 황성철 · 김재엽, 2002, 『한국의 아동복지법』, 서울: 소화
- 황옥경, 2002, “영국의 아동보호제도 분석 -스코틀랜드의 아동문제 청취제도를 중심으로-”, 『아동권리연구』, 6(1): 5-30.
- Alston, P., Parker, S., and Seymour, J., 1992, *Children's Rights and the Law*, Oxford: Clarendon Press.
- Archard, D., and Skivenes, M., 2009, “Hearing and child”, *Child and Family Social Work*, 14: 391-399.
- Bilson, W., and White, S., 2005, “Representing children's view and best interest in court: An international comparison”, *Child Abuse Review*, 14: 220-239.
- Burgess, A., 1998, *Fatherhood Reclaimed*, London: Vermillion.
- Cameron, G., and Freymond, N., 2006, “Understanding international comparisons of child protection, family service, and community care systems in child family welfare”, 3-26, in *Towards Positive Systems of Child and Family Welfare: International Comparisons of Child Protection, Family Service and Community Care*, edited by Freymond, N., and Cameron, G., Toronto: University of Toronto.
- Cashmore, J., 2002, “Promoting the participation of children and young people in care”, *Child Abuse and Neglect*, 26: 837-847.
- D'Cruz, H., and Stagnitti, K., 2008, “Reconstructing child welfare through participatory and child-centred professional practice: A conceptual approach”, *Child & Family Social Work*, 13: 156-165.
- Ennew, J., 2008, “Children as citizens of the United Nations”, 66-78, in *Children and Citizenship*, edited by Invernizzi, A., and Williams, J., California: Sage.
- Ester, P., Halman, L., and de Moor, R., 1994, *The Individualizing Society: Value Change in Europe and North America*, Netherlands: Tilburg University Press.
- Featherstone, B., 2004, *Family Life and Family Support*, Basingstoke: Palgrave.
- Ferguson, H., 2001, “Social work individualization and life politics”, *British Journal of Social Work*, 31: 41-55.
- _____, 2003, “Outline of critical best practice perspective on social work and social care”, *British Journal of Social Work*, 33: 1005-1224.
- _____, 2004, *Protecting Children in Times: Child Abuse, Child Protection and the Consequences of Modernity*, Basingstoke: Palgrave.
- _____, 2009, “Performing child protection: Home visiting, movement, and the struggle to reach the abused child”, *Child & Family Social Work*, 14: 471-480.
- Forsberg, H., 1999, “Speaking of emotions in child protection practices”, 116-132, in *Constructing*

- Social Work Practices*, edited by Jokinen, A. K., Juhila, K., and Poso, T., Burlington: Ashgate Publishing Limited.
- Friedenthal, J. H., Miller, A. R., and Sexton, J. E., 2010, *Civil Procedure*, UK: West.
- Giddens, A., 2002, *Runaway World : How Globalisation is Reshaping Our Lives*, London: Profile.
- Hallett, C., 2000, "Children's rights", *Child Abuse Review*, 9: 389-393.
- Hallett, C., and Darlington, Y., 2009, "Service user participation in diverse child protection contexts: Principles for practice", *Child & Family Social Work*, 14: 420-430.
- Hallett, C., Darlington, Y., and Yellowlees, J., 2011, "Family participation in child protection practice: An observational study of family group meetings", *Child and Family Social Work*, 1: 1-12.
- Healy, K., 1998, "Participation and child protection: The importance of context", *British Journal of Social Work*, 28: 897-914.
- Howe, D., 1994, "Modernity, postmodernity and social work", *British Journal of Social Work*, 24: 513-532.
- James, A., and Prout, A., 1990, *Constructing and Reconstructing Childhood*, Basingstoke: Falmer Press.
- James, A., Jenks, C., and Prout, A., 1998, *Theorising Childhood*, Cambridge: Polity Press.
- Jamison, L., 1998, "Intimacy transformed: A critical look at the pure relationship", *Sociology*, 33: 477-494.
- Littlechild, B., 2000, "Children's rights to be heard in child protection process-law, policy and practice in England and Wales", *Child Abuse Review*, 9: 403-415.
- Ludbrook, R., 1999, "Child advocacy services in new zealand", *Representing Children*, 12: 216-226.
- Lupton, C., 1998, "User empowerment or family self-reliance? The family conference model", *The British Journal of Social Work*, 28: 107-128.
- Magnuson, D., Patten, N., and Looyesen, K., 2012, "Negotiation as a style in child protection work", *Child & Family Social Work*, 17: 296-305.
- Mahoney, M. J., 1995, "Continuing evolution of the cognitive science and psychotherapies", 130-156, in *Constructivism in Psychotherapy*, edited by Neimeyer, R. A., and Mahoney, M. J., Washington D. C.: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 McGhee, J., and Waterhouse, L., 2002, "Family support and Scottish children's hearings system", *Child and Family Social Work*, 7: 273-283.
- McKeowon, K., Ferguson, H., and Rooney, D., 1998, *Changing Fathers? Fatherhood and Family Life in Modern Ireland*, Cork : Collins Press.
- Morris, K., and Connolly, M., 2012, "Family decision making in child welfare: Challenges in developing a knowledge base for practice", *Child Abuse Review*, 21: 41-52.
- Munro, E., 2011, *The Munro Review of Child Protection: Final Report: a Child-Centered System*, London: The Stationery Office.
- Oldman, D., 1994, "Adult-child relations as class relations", 130-152, in *Childhood Matters: Social Theory, Practice and Politics*, edited by Qvortrup, J., Bardy, M., Sgritta, G., and Wintersberger, H., England: Aahgate.

- Parton, N., 1997, *Child Protection and Family Support: Tensions, Contradiction and Possibilities*, London : Routledge.
- Parton, N., and O'Byrne, 2000, *Constructive Social Work - Towards a New Practice*, New York : Macmillan press.
- Payne, M., 1999, "Social construction in social work and social action", 25-65, in *Constructing Social Work Practice*, edited by Jokinen, A., Juhila, K., and Poso, T., Burlington: Ashgate Publishing Limited.
- _____, 2005, *Modern Social Work Theory*, UK: Palgrave Macmillan.
- Pennell, J., 2006, "Restorative practices and child welfare: Toward an inclusive civil society", *Journal of Social Issues*, 26: 259-279.
- Qvortup, J., Bardy, M., Sgritta G., and Wintersberger, H., 1994, *Childhood Matters: Social Theory, Practice and Politics*, Vienna: European Centre.
- Saltiel, D., 2013, "Understanding complexity in families' lives: The usefulness of 'family practice' as an aid to decision making", *Child and Family Social Work*, 18: 15-24.
- Sanders, R., and Mace, S., 2006, "Agency policy and the participation of children and young people in the child protection process", *Child Abuse Review*, 15: 89-109.
- Swift, K., 1995, *Manufacturing Bad Mothers: A critical Perspective on Child Neglect*, Toronto: University of Toronto Press.
- Trotter, C., 2006, *Working with Involuntary Clients*, CA: Sage.
- Valman, B., 1988, "Implications of the cleveland inquiry", *British Medical Journal*, 297: 151-152.
- Vincent, S., Daniel, B., and Jackson S., 2010, "Where now for child protection in Scotland?", *Child Abuse Review*, 19: 438-456.

Social Constructive Analysis and Implication on the Korean Child Protect System

Kim, Hyunok

(Kyungnam National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draw social constructive implications for the child protect system(CPS) in Korea. As the value of social constructivism for child protect system, the participation and the negotiation were identified through theoretical research. And this paper examined how the participation and the negotiation were done in other government's child protect policies. In addition, the focus group members were interviewed. 11 child protect practitioners and researchers were interviewed about the problems of child protect system, law and policies, and they discussed how the participation and the negotiation were done in Korean child protect system. The result of the discussion were as follows. The democratic relationship must be reconstructed through the participation and negotiation in CPS, Korea lacks of legal basis to force the abusers to participation. And in our country, negotiation parties for children cannot be recognized. Finally, the amendment of the law and regulations concerned with the child protect system were proposed based on the FGI's discussions.

Key words: child protect system, social construct, participation, negotiation, focus group interview(FGI)

[논문 접수일 : 13. 06. 29, 심사일 : 13. 07. 05, 게재 확정일 : 13. 10. 15]